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12월 5일

○ 회부일자 : 2005년 12월 6일

□ 제안 이유

○ 공공기관 이전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분장사무 신설

- 건설교통국 : 공공기관 이전·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 한시기구 존속기한

-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 2007년 6월 30일까지

- 공공기관이전지원단 : 2008년 10월 30일까지

## □ 검토 의견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 조정과 한시기구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장기적으로 추진될 사업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신설되는 조직으로 1과 3담당에 정원은 15명이며 2008년 10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 분장사무에 “공공기관 이전·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은 이전계획 수립과 기반조성, 이전기관 사옥 및 공동주택 건설, 이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업무 등 행·재정적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우리 도의 경우에는 조속한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희생자·유족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호적등재, 위령사업 추진 및 의료지원금 지급 업무, 중앙 및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조와 대외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2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위령사업 등 일부업무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연장은 불가피하겠으나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완료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 임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